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희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9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0.

발 의 자 : 박희승 · 윤준병 · 박상혁
박민규 · 남인순 · 이재정
한민수 · 오세희 · 김한규
김 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발생한 달부터 휴직이 끝나는 달까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음.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고용주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지 않고, 근로자는 휴직 기간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.

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장의 금전적 부담은 덜 수 있을지 모르나,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추후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됨.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휴직 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본인이 고용주 부담분까지도 전액 부담하므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불리하다 할 수 있음.

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 0.74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저출생

국가로,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.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결과 남성의 92.1%, 여성의 89.7%가 ‘근로 시간과 육아시간의 조화’를 출산 의향의 주요 조건으로 꼽은 만큼, 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.

예컨대 일본은 육아 및 개호휴직법에 따라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등을 한 경우,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면제하고 그 재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.

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, 피보험자의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함(안 제91조 개정 및 제100조의5 신설).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제1항제1호 중 “휴직”을 “휴직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(이하 “육아휴직”이라 한다)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 하고, 제1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0조의5(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) ① 국가는 국민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해당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1조(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)	제91조(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)
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사업 중단, 실직 또는 <u>휴직</u> 중인 경우	1. ----- <u>휴직</u> 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(이하 “육아휴직”이라 한다)은 제외한다)-----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100조의5(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)</u> ① 국가는 국민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

<u>제100조의5</u>(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) (생략)	<u>중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해당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제100조의6</u>(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) (현행 제100조의5와 같음)
---	---